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

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. 12. 31.로 도래됨에 따라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제2항)

- (현행) 2022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7년 12월 31일

5. 검토의견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

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. 또한,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

○ 2022년 제1차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원회 심의(2022. 9. 28~9.29.) 결과,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유지 필요성이 크므로, 해당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.

○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남북교류협을 위한 재원인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해당 기금 관리·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